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12

2016-12호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등 6건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8건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서울시의회 소년상 설치·지원 조례 발의 등 7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등 7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5)
- ▶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7)
- ▶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11)
-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13)
- ▶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7)
-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 (20)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23)
- ▶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5)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29)
- ▶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31)
- ▶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34)
- ▶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36)
- ▶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40)
- ▶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42)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 ▶ 서울시의회 소녀상 설치 · 지원 조례 발의 (45)
- ▶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착수보고회 개최 (47)
- ▶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워크숍 개최 (49)
- ▶ 충북도의회 효율적인 對중국 수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50)
- ▶ 전북도의회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산자원 조사 · 개발 촉구 (51)
- ▶ 경북도의회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53)
- ▶ 경남도의회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제정 (55)

최근 제 · 개정 법령

- ▶ 국민체육진흥법 (57)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9)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60)
- ▶ 청소년복지 지원법 (61)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2)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64)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7)
-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 운영 조례안 (72)
- ▶ 경상북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6)
- ▶ 곡성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8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 2016.12.21.] [대구광역시조례 제4913호, 2016.12.21., 제정]

□ 주요목적

대구광역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로 한다.

-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

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처리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시행 2016.12.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963호, 2016.12.20., 제정]

□ 주요목적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를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통행,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교통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동 연계 노선버스 확충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대중교통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위해(危害) 방지 등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2조(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대중교통간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하려면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7.6.17.] [경기도조례 제5413호, 2016.12.16., 제정]

□ 주요목적

경기도 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도심 활력 회복,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 공동체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상가거리”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 가운데 인도 폭이 3m 이상 되는 곳을 말한다.
2. “경기도 지정 상가거리”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지정하여 운영하는 노후 상가거리 구역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곳을 말한다.
3. “이동식 간이판매대”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판매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되, 시장·군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 지정 상가거리 지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후 상가의 특화거리 조성 연구
3. 지정 구역 운영 관리와 사용료 징수 방안
4. 이동식 간이판매대 설치 승인 관련 사항
5. 영구적 사적 점유 방지 및 공공성 확보 대책

③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내 노후 상가 거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상가거리 지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군의 기본계획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시장·군수와 충분히 협의하여 도 지정 상가거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 지정 상가거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하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1. 상가 규모·업종 등 현황
2. 상가 조성 배경 및 기간
3. 운영의 독창성 및 차별성
4. 상인 및 주민의 참여도
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도 지정 상가거리는 3년 단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지정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도 지정 상가거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가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사업
4. 이동식 간이판매대 운영 사업
5. 그 밖에 도 지정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시 보행자 통행 저해 또는 상인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① 시장·군수는 도 지정 상가거리 내 간이판매대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 지정 상가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군의 조례 제정) 시·군은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별도의 시·군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4.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6.] [충청북도조례 제3966호, 2016.12.16., 제정]

□ 주요목적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균형발전”이란 광역간의(수도권과 비수도권 포함)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충청북도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참여실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등 모든 과정에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운동을 도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협의체인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

2.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추진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 마련

4.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도,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록을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정 및 의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협의회는 실질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협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 여부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15조(센터의 운영)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운영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운영자에게 고지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5.] [경상북도조례 제3845호, 2016.12.15., 제정]

□ 주요목적

경상북도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는 길”이란 경상북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 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도내 시·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
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도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관련 시·군 및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도내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명품길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생태·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



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7.1.1.] [광주광역시조례 제4802호, 2016.12.15., 제정]

□ 주요목적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평화·나눔의 광주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광주광역시 학생이 광주정신을 올바르게 이해받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이란 인권·평화·나눔의 5·18정신을 바탕으로 저개발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권개선활동과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권·평화·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한다.
2.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은 단순한 시혜적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 속의 광주시민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
3.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은 자발성에 기초하며 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추진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봉사단 파견
2.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국제 자매결연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인인 청소년 단체 등이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지원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17.4.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257호, 2016.12.22., 제정]

□ 주요목적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이고 장애등급이 4~6급인 경우 : 100만원
2.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장애등급이 1~3급인 경우 : 50만원

-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2.]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631호, 2016.12.12., 제정]

□ 주요목적

생명존중의 가치를 살리고 태교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교도시”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태교를 통하여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사회적 환경을 구축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여 태교 및 인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이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태교도시 조성 계획 및 사업

제4조(태교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태교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교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태교도시 관련 주요 정책과제
3. 태교, 인성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 방안
4.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5. 태교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이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수립,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태교도시 조성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태교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교도시 연차별 추진계획
2. 태교도시 관련 주요 정책의 집행계획
3. 그 밖에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이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수립,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교 및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및 홍보
2. 문화·예술·체육 등의 체험활동을 통한 태교 및 인성교육 지원
3.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마련
4. 임산부와 그 가족 및 청소년, 성인을 위한 태교 프로그램 및 관련 행사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태교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태교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여론의 수렴)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미나, 토론회, 여론조사, 제안 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지원단

제11조(설치)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지원단(이하 “시민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2조(구성) 시민 지원단의 수는 10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인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태교 및 인성교육 등 태교도시 조성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임산부와 그 가족 등 태교 및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태교도시 조성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용인시민

제13조(기능) 시민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대별 올바른 태교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건의
2. 태교도시 만들기 사업 홍보
3. 그 밖에 태교도시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4조(실비 지급) 시장은 시민 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태교도시 조성 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태교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전략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태교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4.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
5. 태교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태교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1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

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태교도시 업무 담당 부서 국장
 - 2.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용인시의원 2명
 - 3. 용인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장학사 또는 장학관 1명
 - 4. 태교 및 인성교육 등 태교도시 조성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학부모 단체에 소속하고 학부모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6.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1.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6.]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180호, 2016.12.16., 제정]

□ 주요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4.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4.]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610호, 2016.12.14., 제정]

□ 주요목적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5.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6. “환기설비”이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사업 등)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한 자료 하요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481호, 2016.12.21., 제정]

□ 주요목적

구리시민이 적절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구리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 시장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6.12.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584호, 2016.12.15., 제정]

□ 주요목적

아산시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 등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시장은 근로자 권리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근로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도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이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보호) ① 시장은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모든 근로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동인권지킴이 제도 등 취약계층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안전 및 보건) 시장은 근로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일과 삶의 균형) 시장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제3장 아산시노동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노동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산시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용자 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들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임기) ①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시행 2017.7.1.]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339호, 2016.12.15., 제정]

□ 주요목적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음성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급식종사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3.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4. “식재료비”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단, 1개소당 50명을 초과할 경우 집단 급식소로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①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음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완료보고)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8.]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987호, 2016.12.8., 제정]

□ 주요목적

경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대상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성인용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③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성인용보행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횟수는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추가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성인용보행기를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서울시의회

소녀상 설치·지원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6일 서울시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로 법령과 일치시켜 조례명을 바꾸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념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역사바로세우기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서울시가 나서도록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과 조형물 등의 기념물 설치·지원·관리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역사적 자료의 수집·연구와 교육홍보 사업,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등 국내외 활동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 홍보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2017년 관련 예산 4억3천8백만원 중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기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억3천만원에 불과, 서울시의 기념사업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용석 의원은 “1년 전 12월 28일, 정부의 일본정부와의 굴욕적인 위안부합의는 국민적 합의나 피해 당사자들의 사전협의를 전혀 없이 강행되었기 때문에 전면 무효이다”라고 지적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정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을 통한 명예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본정부가 바라는 소녀상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세계 평화와 인권, 일본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제 서울시도 더 많은 소녀상 건립을 위해 설치·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조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자 첫 조형물은 2007년 경남 하동 평사리공원의 ‘평화의 탑’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국내외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 9곳을 비롯해서 국내 45곳, 해외 11곳, 총 56곳에 달한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가 지난 12월 21일 의회 운영위원실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는 지난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양교섭단체가 합의한 연정합의문을 바탕으로 의회의 기능 강화 및 개선 방안 마련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조직과 인력의 개편방안 등의 마련을 위한 용역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석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승현 의원, 박옥분 의원, 박재순 의원, 윤재우 의원, 이상희 의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계획을 보고 받고, 예결위 발전방향, 교육위원회 개선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본 용역은 경기도의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전방향 연구, 법제위원회 설치방안 연구 등이 다뤄질 예정으로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본 용역의 공동연구원인 (사)한국정책학회 정창수 박사가 향후 경기도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용역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재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의원님들 간의 심층 면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박옥분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효율적 역할 분담, 지속가능한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이상희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실질적인 기능보강 및 역할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강조하였으며,

이어서 △조승현 의원은 연구중심이 아니라 현실성 중심의 연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김종석 위원장은 “현재의 법체계 속에서 개선 가능한 분야와 법·제도적 개편을 통해 이를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실천적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본 용역은 내년도 10월에 완료되며 제10대 경기도의회 운영과 의회사무처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워크숍 개최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12월 22일~23일 메이힐스리조트 등 정선군 일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개최된 워크숍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합리적 대응방안 모색, 폐특법 종료(2025년)시를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폐광지역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폐광지역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현장감 있는 특위활동을 위하여 폐광지역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산업 육성사업장(삼탄아트마인)을 방문하였다.

김기철 위원장은 전년도에 쟁점이 되었던 해수부 장관의 선상 크루즈 내 내국인 출입 허용 발언, 세수확보를 위한 카지노 레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은 폐광지역 주민들과 정치권 및 행정기관 등의 유기적인 대응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석탄공사의 단계적 구조조정 및 새만금 특별법 개정 추진 등 폐광지역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쟁점현안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진은 물론 생존차원을 넘어 자체적으로 성장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율적인 對중국 수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황규철)는 12월 14일 ‘충청북도의 효율적인 對중국 수출 방안’에 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및 관련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산업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이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하고, 이어 향후 충청북도의 효율적인 對중국 수출 방안 모색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황규철 위원장은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중요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있는 거대시장으로, 충북 기업의 효율적인 對중국 진출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제안들이 도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으며, 충북 기업의 중국수출 확대로 수출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산자원 조사·개발 촉구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 제1)은 12월 14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및 새만금 간척에 따른 전북 연근해 수산자원 조사·개발을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은 기후변화와 새만금 간척사업이 어업생산량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어업량 감소에 따른 대체어장 개발을 위한 수산자원 조사를 전라북도 연안 해역 전체로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공사전('86 - '90년) 평균 수온은 14.49℃였으나 준공 후('11- '15년) 평균수온은 15.57℃로 1.08℃ 상승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전북 수산물 연도별·유형별 생산동향(22개어종)에 따르면 방조제 공사전 평균 생산량('86 - '90년)은 84,241톤에서 방조제 준공 후('11- '15년) 평균 생산량이 21,905톤으로 공사전보다 무려 73.5%나 급감했다.

전북 연안어장의 경우 개량조개(99%), 동죽(96.2%), 갈치(92.7%), 양태류(87.8%), 강달이류(86.4%) 살오징어(85.7%), 병어(85.1%)품종은 생산감소세가 매우 뚜렷하다.

반면 바다 수온상승에 따라 난류성 어류인 고등어(서식수온 : 10-2

5℃)가 새로운 어장으로 형성되고 꽃새우는 방조제 공사전에는 생산되지 않았으나, 방조제 공사 진행 시기에 호황을 보이다가 준공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박재만 의원은 대체어장 개발은 정부의 김 수출산업 확대 전략에 따라 김 양식 어장 확대개발이 필요하며 꽃새우 등 대량 출현과 멸치 어획량 증가에 따른 수산자원의 특성 및 서식생태 조사를 통한 어장 및 어구어법 개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및 허가어업 확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갯벌, 해양생태, 수산자원 및 연근해 조업 등과 연계된 DB 구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안정된 수산업의 생산과 공급으로 6차 산업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효율적인 수산물 수출 증대를 도모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시급히 갖추라고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12월 19일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안동시지회와 아파트패밀리뉴스 및 전국아파트신문사의 주관하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상북도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주요현안들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택 현안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선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원(제10대 전반기 의장, 안동)이 직접 좌장을 맡았고,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재용 광주지부장이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중앙대학교 사회대학원 광도 교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서 한국주택관리협회 김동을 경북지회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이광식 관리담당관, 법무법인 동승 이승호 대표,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이재운 과장,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허보한 안동시지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대진 의원은 공동주택의 문제는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의회 최초로 공동주택 관련 토론회

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주제인 만큼 ”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조례 제·개정 등 공동주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노력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서도 오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정책연구위원회 정영길(문화환경위원회, 성주)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특히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입법정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제정

경상남도의회 이병희 의원(교육위, 밀양1)이 대표발의 한 ‘경상남도 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가 12월 13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이학·공학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자들을 도내 초·중·고등학생이나 교사의 과학교육 활동에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멘토링 기본방향과 멘토와 멘티 관리 및 연계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서 고경력 과학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과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다.

이병희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과 연구 경험을 가진 고경력 과학자들의 재능이 퇴직으로 인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우수한 재능이 도내 학생들과 교사들의 과학교육 활동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 필요한 이공계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426호, 2016.1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함(제14조제5항·제6항 및 제49조의2 신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30호, 2016.1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화재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상영관과 유사한 공연장에 대해서는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재해예방조치 미 이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2호, 2016.1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 잠재적 성 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홍보하는 한편,

성매매(알선)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한 지도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설명, 상담소 안내 등을 통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실시간 대화기능이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 규정함(제33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3조의2 신설).

4.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3호, 2016.1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 권고 외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 중인 조례·규칙,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7호, 2016.1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어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장 명칭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원장’을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제26조 및 제27조).

다.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청소년쉼터의 장은 해당 가출청소년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 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함(제32조의2 신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9호, 2016.1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높은 보육수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제2조제7호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함.

나. 다른 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절차 등 명확화(제7조의3제3항 신설)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제11조제1항)

민간 개발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라. 연결한 산업단지의 통합(제13조의3 신설)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결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농공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제22조제2항)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서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 지정 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로 앞당겨 조정함.

바.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2항제3호 신설).

사.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제29조의2 신설, 제31조 및 제40조의3제4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2.23.]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도록 하고,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제4조 신설)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입자상물질, 그 밖에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신설)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등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다. 라돈관리계획의 보고(제9조 신설)

시·도지사는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

적을 보고하도록 함.

라.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제11조 및 제12조 신설)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등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조직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동작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사전 조정을 담당하는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안건번호)의견16-0261, (회신일자)2016-09-27

【질의요지】

- 가. 동작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사전 조정을 담당하는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나. 동작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자문단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 가. 동작구 위원회에 자문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및 제72조에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직접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문단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거나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자문단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유】

가. 공통사항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 함)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법 제72조에서는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정하면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동작구 조례안”이라 함)은 법 제8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조례로서(제1조), 분쟁의 사전조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을 별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4조 제4항), 이 사안은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 없이 동작구 조례안에서 동작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동작구 위원회”라 함)에 자문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이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심의하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한 것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신고(제1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제17조),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의 신고(제19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제33조), 공동주택의 증축·개축·대수선 등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제35조) 등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사전

적으로 심의하여 조정안을 권고하는 것 또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조정결과 수락의 효과 및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만을 직접 정하고 있을 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작구 위원회에 분쟁의 사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자문단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동작구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자문단에서 분쟁의 사전조정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자문단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에 국한되어야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거나 대체하도록 할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에 반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작구 위원회에 자문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에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직접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문단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거나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자문단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동작구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앞서 분쟁을 사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문단은 “동작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작구 위원회에” 설치되는 것인데 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문단의 기능, 구성, 운영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조례로 먼저 정하고, 그 외에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만 시행규칙이나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작구 조례안에 자문단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법 제80조제3항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거창문화재단의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건번호)의견16-0258, (회신일자)2016-10-13

【질의요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거창문화재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거창군이 출연하여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정안」(이하 “거창군 조례안”이라 함)은 거창군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서(제1조), 제2조에 따르면 거창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제3조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등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에서는 재단의 운영재원으로 군의 출연금, 보조금 등을 규정하면서 ‘기부금’을 규정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이 조례에서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거창군에서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거창문화재단을 설치하면서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면서, 제2호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거창군이 출연하여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단이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면 상기 기부금품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7조제2호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마련된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2016. 7. 행정자치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예산의 예산과목으로 ‘기부금수익(624-01)’을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거창군이 출연하여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부금품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부금수익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지역문화재단의 재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부금품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마련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기부금수익을 예산과목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거창군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기부금을 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창군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기부금을 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이 조례가 아니라 기부금품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거창군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했다고 하여 이 조항이 곧바로 거창문화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 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 경상북도에서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전번호)의견16-0281, (회신일자)2016-11-02

【질의요지】

경상북도에서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포항·예천공항 및 울진비행장 경계와 연접한 읍·면·동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경상북도에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무는 경상북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상북도 조례안 제4조제7호에서와 같이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경상북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경상북도 조례안”이라 함)은 경상북도 내의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제1조)으로서, 제2조제3호에서 “소

음대책지역”을 “포항·예천공항 및 울진비행장 경계와 연결한 읍·면·동 지역”으로 정의하고,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사업(제1호)’,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업(제2호)’, ‘공영방송 수신료 및 전기료 지원(제7호)’, ‘그 밖에 공항소음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상북도 조례안 제4조에서와 같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경상북도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항소음 및 소음대책지역 등에 관하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제2조제2호에서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인천 등 6개 공항 주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2016. 1. 6. 기준)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

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앞서 살펴본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지역인 “포항·예천공항 및 울진비행장 경계와 연접한 읍·면·동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규정하여,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이 아닌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입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별도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경상북도가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지원하는 사무는 이러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공항소음방지법에서는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의 취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항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추가로 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음대책지역을 별도로 정하여 공항소음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공항소음방지법령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상북도 조례안 제4조제7호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 및 전기료 지원’을 주민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는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직접 공영방송 수신료와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경상북도 소음대책지역 내의 주민에 대하여 직접 공영방송 수신료 및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지방재정법령의 규정과 앞서 제시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조례안 제4조제8호에서는 ‘그 밖에 공항소음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중에는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무는 경상북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공항소음방지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상북도 조례안 제4조제7호에서와 같이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규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상북도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나,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과 이 사안 조례안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집행 시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 조례안에서는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 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 군수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전번호)의견16-0269, (회신일자)2016-11-03

【질의요지】

군수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에 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에 관한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서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곡성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하 “곡성군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업무제휴”란 곡성군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협약”이란 곡성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계약서 등으로 정의하면서, 제6조제2항에서는 군수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같은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4. 10. 24. 회신 의견 14-0234 참조),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된다면 군수는 해당 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와 배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안은 군수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적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권리 및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관계를 맺을 당사자 간의 대략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방자치법」 제 39조제1항제8호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업무제휴와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의무와 권리의 포기가 예상되더라도 이는 향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확정되어질 내용으로 권리·의무의 변동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법적 효력을 지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업무협조 차원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경우,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범위를 넓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때에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있는 시점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또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중복 동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3. 12. 16. 회신 의견 13-0372 참조).

다만, 곡성군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협약의 유형으로 계약서를 포함하고 있는 등 장래의 일정한 시점이 도래하거나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등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야 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성격의 업무제휴나 협약의 경우에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

조 단서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에 근거 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군수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면 이는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률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조례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등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조례에서 지방의 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에 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에 관한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서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6년 12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